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최근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초부터 검토해 온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7월 2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Farm to Table)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① 사육단계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 강화

-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육과정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대폭 감축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국순회 농가교육을 연 2회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지도·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항생제 등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②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

● HACCP은 2003년 7월 이후 도축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축산물가공장에 대해서는 희망업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 전국 162개 도축장중 122개소가 현재 HACCP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 40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중) 축산물 가공장의 경우 전체(2,575개소)의 5% 수준인 138개소에서 실시중임.

● 정부는 선진 위생관리 기법인 HACCP을 농장에서 판매업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사료공장은 2005년부터 자율시행 후 2007년부터 HACCP실시를 의무화 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2005년부터, 보관·운반단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임의제도로 도입키로 하였다.

농장에 대해서는 2006년 양돈을 시작으로 젓소(2007년), 한우(2008년), 산란계(2009년), 육계(2010년)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율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축산물 판매업소 5만3천개소 등 HACCP 적용대상 업소가 약 7만개소에 달하고 향후 HACCP 인증에 대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현행 조직(검역원 담당인력 2명)으로는 HACCP 인증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확충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별도 민간기구(특수법인)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관련업소수 : 축산물 판매장 53,000, 보관·운반업소 1,000, 사료공장 500, 도축·가공장 2,700, 전업축산농가 약 13천개소 등

2.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①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

● 잔류물질 검사는 주사자국, 화농부위, 과거 위반이력농가 출하가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으로 검사물량은 2004년 10만2천건에서 2005년 12만건으로 확대된다.

● 미생물 검사는 대장균(도축장 영업자), 살모넬라균(시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허용기준(대장균)은 소 100개/ml, 돼지 10,000개/ml, 닭 1,000개/ml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HACCP운용내용 재평가,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진다. 미생물 검사물량은 2004년 9만2천건에서 2005년 12만건으로 확대된다.

② 도축장 HACCP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

- HACCP운용실태 점검대상이 도축장 HACCP 미 운용 도축장 및 기 지정(확인)을 받은 도축장으로 확대되고, 점검방식도 시·도 자체 점검 후 행정처분한 내용을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 또 행정처분기준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로 강화된다.

③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도입

- 2003년 7월 도축장에서의 HACCP 적용 의무화 이후 약 1년이 경과되었으나 HACCP 실시 도축장간에도 운용정도에 따라 위생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도축장별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축산물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정책자금 지원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을, 중위권 도축장에는 3%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참고로 도축장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2005년 예

산안에 578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④ 2008년부터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가공장 및 정육점 등에서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한 후 도계장 또는 가공장명 등을 표시하여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 포장 원칙

- 닭·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자체 가공제외)의 포장

- 포장 후, 합격점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명, 소재지,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

- 닭·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 정육 등의 포장

-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생산가공장 소재지,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고 자체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

- 닭·오리고기 판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생산판매장 소재지,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국내산과 수입육 구분표시)한 후 판매

- 수입된 닭·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 표시 등을 하도록 의무화

- 구체적으로 대규모 도계장(1일 도축 8

만수 이상)은 오는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는 2008년부터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3. 유통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

① 축산물 유통(보관·운반·판매·집유)단계 HACCP 도입

- 전문가로 작업반(T/F)을 구성하여 유통단계에서 지켜야 할 일반위생관리기준(SSOP)과 위해요소(물리, 화학, 생물학적)별 중요관리점(CCP) 설정·평가기준, 유통단계별(규모별) 위해요소관리 적용모델 개발·HACCP 지정신청, 인증방법, 감독 등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② 축산물 위생 감시 체제 정비

- 그동안 축산물 위생점검은 사전단속 계획이나 출장명령없이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위생점검 실명화 및 책임 점검제 등의 도입으로 위생점검 체제를 정비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항은 1회 위반시에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가능토록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반복기간을 3년 내로 규정토록 하고, 1차 위반만 과징금 부과, 2차 이후부터는 영업정

지와 동시에 형사고발(상습범은 가중처벌) 조치하는 등 가중처분행위기간 연장할 계획이다.

- 밀도살, 무허가 영업 등 심각한 축산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한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 축산물을 처리, 가공,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3회 적발돼야 영업장을 폐쇄했으나 앞으로는 한차례만 적발돼도 폐쇄조치를 내린다.

③ 축산물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유통 중인 축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행 연간 10만건 수준에서 12만건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중 1만5천건은 가공장의 원료육이나 보관·운반·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지육과 정육에 대해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위해 축산물 리콜 시스템(Recall) 강화

-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위해가 발생우려 또는 발생시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폐기토록 하는 등 위해축산물의 자발적 회수가 추진될 계획이다.

-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⑤ 축산물 위생 감시원(명예감시원) 제도 정착

- 현재 위생감시원은 212명, 명예감시원은 1,00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각각 1,000명, 2,000명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고, 임명 대상도 위생감시원의 경우 수의사에서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위생사, 영양사,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미생물학 등 소지자로, 명예감시원은 소비자단체에서 생산자단체, 축산물 관련 협회 등 소속직원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⑥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강화

- 일부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에서 아직도 육류를 외부에 현수하여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중 현행 10% 수준인 재래시장 수거물량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군·구간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4. 판매·소비단계의 위생·안전성 확보 대책

① 2007년부터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하여 허용

- 지금까지 식육판매업(정육점)은 누구나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식육처리기능사제도는 1996년 도입되어 현재 약 3,100명의 식육처리기능사가 배출되었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② 식용란 위생검사 실시 및 처분

-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잔류허용기준 초과(잔류허용기준은 네오마이신 0.5mg/kg 이하, 스펙티노마이신 2.0이하,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이하, 플루벤다졸 0.4이하임) 알은 식용 또는 가공용 공급을 불가토록 할 계획이다.

- 오는 2005년부터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규정을 마련한다.

③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대응 체제 구축

- 인수공통 전염병 등 위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부,

검역원, 식약청, 시·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동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위해상황 발생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유사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으나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관련 기록, 유통·판매 경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사항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5. 수입 축산물 위생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

① 수입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수입상대국 및 국제기구 논의내용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위생·검역관련 국제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국가별, 축산물별 위험평가·위험관리방법 도입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축산물 수출 상대국의 작업장(도축·가공·보관)의 점검을 강화키 위해서 축산물 수입 물량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국가와 위생·방역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점검계획 수립 시행키로 했다.

② 축산물 수입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 수입 축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검역원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 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판매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

6.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강화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정책추진을 위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임원의 참여를 확대(25% 수준)시킬 계획이다.

② HACCP확대도입에 따른 전담조직 설립 검토 추진

- HACCP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전담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번 대책에서 제시된 총 28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금년내에 조치를 마무리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의지를 갖고 금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